

독금법 예외 카르텔“ 폐지”

일본, 96년3월부터 ... 불항카르텔은 존속기로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조직법과 내항해운조합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카르텔제도를 원칙적으로 95년말(96년3월말)을 기해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곧 개최되는 유관부처와의 연락회의에서 개별법을 관할하고 있는 각성우에 대해 법폐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독금법의 적용범위를 넓힘으로써 미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독금법의 운용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제외 카르텔 폐지는 경제개혁연구회가 8일 발표하게 될 규제완화대책의 중간보고에도 반영될 예정인데 유관부처에선 각산업계에 대한 배려때문에 개별법률의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일본 정부내의 조정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독금법은 가격과 생산량 등을 사업자나 단체가 합의하는 카르텔행위를 허용하면서 독금법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적용제외의 근거는 독금법·적용제외법외에 중소기업단체조직법 등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중 개별법에 의거한 적용제외 카르텔은 25개법률 및 42개제도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카르텔규정은 폐지시킬 방침이다.

이는 비효율적인 사업자가 보호받아 소비자의 이익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다 경쟁의 제한으로 사업자의 활력이 저해되는 등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산업계보호책태가 강한 적용제외 카르텔의 폐지가 생활자중시를 내건 호소카와내각의 기본정책에도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독금법과 적용제외법에서 규정하는 카르텔제도는 계속 허용하는 한편 현재 개별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것중에서도 불항카르텔이나 합리화카르텔등은 계속 독금법에 의한 카르텔로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총무청과 공동으로 오는 중순경 개최하는 연락회에는 중앙의 모든 유관부처가 참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폐지검토대상이 될 개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카르텔은 다음과 같다.

담배경작조합법에 의한 공동경제사업, 과수농업진흥특별법에 의한 과실의 매매에 관한 결정, 수출산업의 진흥에관한 법률에 의거한 주원료구입카르텔, 동지정기관, 어업생산조정조합법에 의거한 어업조정 카르텔, 진주양식 등 조정잠정조치법에 의한 과당경쟁방지카르텔, 동품질개선유지카르텔, 동설비제한카르텔,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에 의한 설비제한카르텔, 잠사업법에 의한 누에가격에 관한 결정,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과당경쟁방지카르텔, 동합리화카르텔, 설탕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불항카르텔, 도매시장법에 의거한 과당방지카르텔, 도매시장법에 의거한 과당방지카르텔, 상점가진흥조합법에 의거한 공동경제사업, 보험업법에 의거한 보험카르텔,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험카르텔, 해상운송법에 의거한 해운카르텔, 동항만관계카르텔, 항공법에 의거한 항공카르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거한 항만운송카르텔, 창고업법에 의거한 창고카르텔, 내항동해운사업, 자동차터미널법에 의거한 운수카르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의 한 운수카르텔, 저작권법에 의거한 상업용레코드의 2차사용료규정,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영안정카르텔, 동합리화카르텔, 동특수계약, 동수출업자의 국내 카르텔, 동생산업자들의 수출용 국내 카르텔, 동수입카르텔, 동수출입조정카르텔, 동무역연합, 동지정기관, 환경위생관계영업운영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음식점업·이용업·여관업·세탁소업 등 대상)에 의거한 과당경쟁방지카르텔 등이다.